# 「KB연금우대적금」특약

### 제1조 적용범위

KB연금우대적금(이하"이 적금"이라 합니다)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2조 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 제3조 계약기간

- ① 이 적금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가입 시 등 재예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만기일에 제세금을 공제한 해지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금 초회 저축금으로 하여 1년 단위로 4회(최초 계약기간 포함 5년)까지 자동 재예치합니다. 단, 최초 가입 이후와 재예치 이후에 추가저축이 없는 계좌, 비과세종합저축한도 초과 계좌 및 압류, 사고신고,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 계좌, 만기 재예치를 신청하지 않은 계좌는 재예치되지 않습니다.
- ② 자동재예치시 재예치 통지를 요청한 고객에게만 고객이 신청한 방법(SMS 또는 이메일)으로 통지합니다.

# 제4조 저축금액

이 적금은 1만원 이상 원단위로 월 3백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이 자

이 적금의 이자는 신규일(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된 이율로 적용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제6조 우대이율

- ① 이 적금의 신규일(재예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까지「KB연금우대통장」 또는「KB국민연금安心통장」으로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입금이 있는 경우 연0.2%p(세금공제전)의 우대이율을 1년간 지급합니다.
  - 1. 4대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단에서 입금된 금액
  - 2. 국가보훈처에서 입금된 금액
  - 3. 「KB골든라이프 공사주택연금론」및「KB골든라이프 주택연금론」의 월지급금
  - 4. 당행 연금신탁에서 입금되는 연금
  - 5. 당행 퇴직연금에서 입금되는 연금
  - 6. 「KB골든라이프예금」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
- ② 제3조에 따라 재예치되는 계좌에 대하여는 연0.1%p(세금공제전)의 우대이율을 1년간 지급합니다.
- ③ 이 적금의 우대이율은 만기해지시에 한하여 계약기간동안 적용합니다.

## 제7조 특별중도해지

신규일(재예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에 예금주 본인의 회갑, 칠순, 팔순, 퇴직, 창업, 3일 이상 입원, 해외여행, 이사 사실을 확인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부 칙(2011.02.21)

이 약관은 2011.02.21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2.06.11)

이 약관은 2012.06.11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5.01.01)

이 약관은 2015.01.01 부터 시행합니다.